

씨애틀에서 만난 여름보다 뜨거운 IP 연수의 현장

미국, 잠들지 않은 IP강국

특허분야의 전문인력은 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높여나가기 때문에 한번 관계를 맺으면 이후에도 상호의 유익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해외 연수를 고민하는 사람이나 기업이라면, 분명 이러한 다양한 효과를 생각하고, 그 효율성을 가능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 간략하나마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식재산 연수 프로그램의 두 가지 유형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다양한 여름강좌들이 개설이 되는 것은 IP분야라고 다르지 않다. 특히 새로운 판례라도 나오게 되면, 기업은 기업대로 새로운 특허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한 기업에 특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로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전략을 제공하고자 분주해진다. 당장은 새로운 판례의 변화에 따라 대응 할 사항이 없더라도, 기업들은 분명 경쟁사의 특허전략의 변화를 예감하고 직원들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특허요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예산과 체계가 잡힌 기업이라면, 해마다 정규적인 교육파견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해외에 수시로 출원을 하고, 해외 경쟁업체와의 분쟁을 겪어 본 기업이라면 거래하는 로펌에서 운영하는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짜게 되겠지만, 그에 앞서 전반적인 미국의 특허제도와 판례동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의 조금은 일반적인 사항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하절기에 운영되는 다양한 IP 연수프로그램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은 대체로 2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 볼 수 있는데, 교육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연수 프로그램과 로펌이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분명 이 둘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IP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대체로 대학의 로스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로스쿨 출신의 변리사와 변호사들이 주변 지역의 로펌과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



그림1. 씨애틀의 상징과도 같은 Pike Place Market을 알리는 네온보드

고, 로스쿨에서 실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교수진 등의 풍부하고 다양한 교수인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큰 매력이 있다. 반면, 로펌에서 운영하는 IP 연수 프로그램은 보다 전문화된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로스쿨의 프로그램들이 로스쿨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흐름에 맞춰 외부의 로펌 변리사와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로펌에서는 미국의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강의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비슷하지만 해당 로펌의 전문성을 내세우는 내용과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전략을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사교모임이나 교류활동도 로스쿨 보다는 로펌 쪽이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정에 맞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미국의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에 보다 치중한다면 로스쿨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되고, 특정 로펌에서 보다 전략적인 내용까지를 배우고 싶다면 로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된다. 물론, 이 두 가지의 교육형태가 극단적으로 양분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로스쿨 프로그램에도 다양한 사교활동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펌의 전문가들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로펌의 프로그램도

인근 저명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전문 변리사나 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대학으로부터 교수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으니만큼 각각은 교육내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대등소이하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양쪽 다 일정 정도는 로비를 위한 활동이기도 해서, 자신들의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기도 하다.



그림2. CASRIP 연수가 진행된 워싱턴 대학교의 로스쿨 건물

과정명	소재지	운영기관	교육내용(기간)
Patent & IP Law Summer Institute	미국 워싱턴주 씨애틀	CASRIP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분야별 특허출원, 소송실무 (3주: 7.14~29)
Summer Patent Seminar	미국 버지니아주 워싱턴 D.C. 근교	BSKB(로펌)	미국IP분야 실제 사례 및 특허동향 (4주: 6.11~7.1)

대표적인 IP Summer School의 비교표(CASRIP vs. BSKB)

로스쿨 기반의 IP 연수 프로그램 : CASRIP

이번 글을 통해서는 대표적인 IP Summer School 프로그램 중 로스쿨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연수프로그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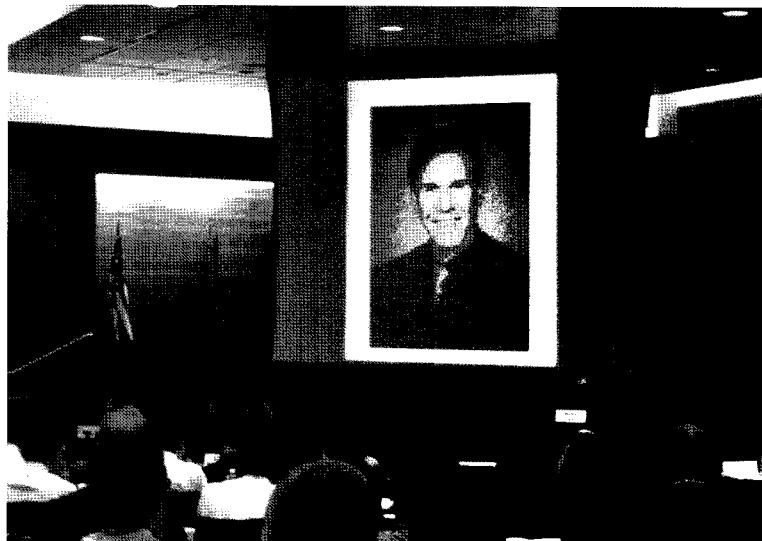


그림3. CASRIP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인 Randall Rader의 지원과 참여를 자랑으로 하고 있다.

소개하고자 한다. 줄여서 CASRIP(Center for Advanced Study & Research on Intellectual Property)라고 부르는 워싱턴 주 씨애틀에 소재한 워싱턴 대학교의 IP연구교육기관의 2011 Patent & IP Law Summer Institute가 그것이다.

CASRIP이 소재한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¹⁾은 미서부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북미 북서부만의 명문이 아닌 미국 전체로 봐도 명문 수준이다. 한국인 유학생이 많아 우리나라에도 제법 잘 알려진 학교인데, 현재까지 노벨상 수상자만 12명, 풀리처 상 수상자는 2명을 배출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이 대학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최고라고 하는 대학들을 모두 합쳐도, 이 한 캠퍼스의 업적을 앞서지 못한다는 점은 참으로 서글프다.

워싱턴 대학교의 로스쿨(School of Law)은 미국 내 로스쿨 랭킹으로는 30위권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물론, IP 법률 분야 역시 로스쿨의 위상을 올려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대학의 장점은 특허에 민감한 기업들이 미국 북서부에 기틀을 잡고 있으며, 아시아권으로의 진출이 용이한 교두보로 활

용할 수 있는 등의 발전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 미국 내 로스쿨의 랭킹이라는 것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랭킹의 위치로 교육의 질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다. 쉽게 말하면, IP 관련 여름 강좌를 듣는데에는 아무런 흠이나 결격사유도 없다는 뜻이다.

IP Summer Institute의 개요 및 참가자

CASRIP의 여름학기 강좌는 2주간의 빽빽한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출원, 특허소송, 기술 라이센싱과 매니지먼트 등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미국 법제도와 소송제도 등에 대한 특허과정 전체를 다룬다. 2주 동안에 특허과정 전체를 다룬다는 것은 물론 어불성설이다. 전체라기보다는 전반을 다룬다고 할 법하지만, 실제로 IP 관련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허과정 전체를 다룬다는 말도 분명 성립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강좌 자체의 치밀하고 세밀함도 있지만, 이 강좌에 참여하는 대상이 특허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이들로 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참가자들의 면면을 보면, 대개 비영어권 국가의 지재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대부분이다. 2011년 참여자는 일본, 대만, 한국 등의 특허청 소속 심사관과 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변리사와 임직원은 물론이고, 체코 지방법원 판사, 인도의 로스쿨 학생과 석유에너지자를 전공하는 대학교수들, 멕시코에서 온 대학교수,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기관 임원, 독일 바이엘 연구소 연구원, 카자흐스탄의 교육연구원 그리고 우간다의 국제법연구소 연구원까

1) 2010년 기준 문리과대학, 건축·도시계획대학, 경영대학, 치과대학, 교육대학, 공과대학, 환경대학, 정보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해양·어업과학대학, 약학대학, 대니얼 J.에번스 공공법무대학, 공중보건대학, 사회사업대학,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0여 개의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진행한다. 홈페이지 : www.washington.edu

지로 총 59명의 면면이 모두 다채로웠다.

여기에 추가로 8명의 연구생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TA(Teaching Assistant)의 역할을 해주었다. 수업 후 수업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아메일로 보내주거나, 수업 중에 수강자들이 충분히 질문하지 못한 바들을 강의자에게 질문하고, 수업이 종료된 후에는 수강자 그룹을 지어 자신이 맡은 수강자들과의 팀티칭을 진행하였다. 이들의 도움을 잘 활용하면, 수업에서 이해 못한 점들을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정보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들 TA 역시 영미권 출신의 연구생들은 아니다. 일부는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UW(University of Washington의 줄임.) 로스쿨에서 IP를 전공하게 된 이도 있고, 실무경험을 가진 이들 중 이론적인 측면의 연구를 깊게 하고자 참여하는 이들도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paralegal로 근무하면서 학업을 수행하는 이들도 있었다. 수강자들보다는 책임이 막중한 이들이기에 수업의 진지한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보이지 않은 조력자들이었다.

IP Summer Institute의 강좌 구성

Mon	Tue	Wed	Thu	Fri	Sat
			14 . Legal English, US litigation Overview.	15 US Trademark US Trade Secret US Copyright	16
18	19	20	21	22 High Technology Protection Summit	23
Patent Basics - Patentability - Patent Eligibility	Patent Basics - Claim interpretation Patent Litigation	US Patent Prosecution - Application Drafting	US Patent Prosecution - Office Action, Examiner Interview		
25	26	27	28	29	
1. Advanced Patent Prosecution (트랙별 강좌운영, 택1)					
Drug Dispute	Rule of Priority	Continuation Strategies	Appeal at USPTO	Office Action Strategies	
2. IP Enforcement & Management (트랙별 강좌운영, 택1)					
EU Practice	EU Patent Licensing	International Litigation Strategies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IP-Entrepreneurship	Patent Evaluation	
3. EU & US IP Enforcement (트랙별 강좌운영, 택1)					
EU Practice	EU Patent Licensing	International Litigation Strategies	International Enforcement	International Negotiation Strategies	

CASRIP Summer Institute 강좌(간략)일정표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는 첫째 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강좌는 특허과정 전체를 다룬다. 그래서 특허제도가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기능이 있으며, 그러한 권능은 헌법에서 연원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 성립의 역사를 배우는 것 같은 기분으로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어서 미국의 소송구조와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본격적인 특허제도에 관한 수업의 워밍업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특허제도와는 다른 상표법과 영업비밀, 저작권 등에 관한 제반 제도를 설명함으로써, 첫째 주의 이틀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틀간의 강의에서 가장 주안점을 둘 점은 법률 용어와 우리법과는 다른 영미법의 체계를 다소나마 이해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미국 특허소송에 관한 지식이 있다면 향후 진행될 강의를 강의로서가 아닌 토론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강의자들의 이야기들을 오직 학생 입장에서만 들을 수밖에 없다. CASRIP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는 실제로도 상당부분이 강의라기보다는 분야별로 강점을 가진 로펌들의 사업설명의 자리와 같이 내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허분야의 전체 핵심사항을

다루는 둘째 주

Patentability – 특허 요건은 우리의 특허법에서 명시한 바와 결코 다르지 않다. 하지만, 미국은 어디까지나 성문법이 아닌 판례와 법률사례로 법이 성립되는 불문법 국가다. 그래서 우리 법처럼 산업상이용가능성과 같은 내용도 그리 간단한 법리가 아닌 듯 비춰진다. 분명 법률상의 논리와 이론들은 현실의 사건으로 다루어야 법으로서의 생명을 갖는 미국이기에, 문언적인 의미뿐만 아니

라, 관련된 사건(case)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특허법의 기본에 대해 다뤄지는 강의는 이틀에 걸쳐 진행이 되며, 항상 Case book을 인용하며 진행한다는 점이 특색이다. 특허법 기본은 특허법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First-To-Invent(발명우선주의)와 Statutory Bars(불특허 요건), Claim Interpretation(청구항의 해석)이 다뤄지며, 미국 특허청 소속 심사관으로부터 Patent Eligibility(특허의 성립성)와 Utility(이용가능성), Novelty(신규성), Nonobviousness & Disclosure(비자명성과 공개) 등의 강의를 듣게 된다. 미국에서도 현재는 발명우선주의와 등록우선주의 간의 다양한 논의가 다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조만간 어떠한 변화가 있으리라는 귀띔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특허소송 중 선출원 전략과 변론, 그리고 미국의 소송 진행 단계인 pre-discovery, motion, trial에 대한 강의로 함께 진행이 되는데, 우리의 특허법 교육이 소송을 특허법 이론 교육 이후에 진행하는 것과는 달랐다. 분명 법률은 특히 특허법은 소송과 분쟁을 염두에 두고,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법의 활용이 미국에서 그리고 특허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특허의 출원 절차와 전략에 관한 강의도 둘째 주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특허출원서의 작성(Patent Application

Drafting)과 심사결과 통지(Office Action)와 심사관 면담(Examiner Interview)에 대한 내용이 이어진다.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학습과 논의가 이루어져서, 출원서의 청구항 작성에 대한 논의는 익숙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구항의 문언적 범위를 어떻게 하면 넓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례들을 설명해준다. 언어의 차이로 인해 과연 어떠한 표현이 보다 광의의 표현인지를 모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분명 놓쳐서는 안 될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compose와 be made up of를 같은 의미로 배우는 한국의 학교 영어환경에서는 이러한 학습과 논의의 시간이 필수라고 생각된다.

특허소송과 관련된 강의는 침해 구제(Infringement Remedies) 방안에 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단지 침해구제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내용의 강의가 아니다. 물론 소송 이외의 ADR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중요한 소송가액의 산정과 같은 내용이 보다 핵심주제로 다루어진다. 우리의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과 미국의 법원이 생각하는 손해액은 분명 다른 범위와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현실적인 손해만을 소송가액으로 삼을 수 있느냐와 어느 정도는 미래적인 가치도 소송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 대상이 되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특허이슈를 다루는 셋째 주

셋째 주 동안의 강의 일정은 3개의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이 된다. 지난 7일간의 강의를 통해 충분히 미국의 특허제도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고 보

기는 어렵겠지만, 어드밴스 과정으로서 보다 실무적인 사항과 국제법 관련 사항 그리고 기업가 입장에서의 특허제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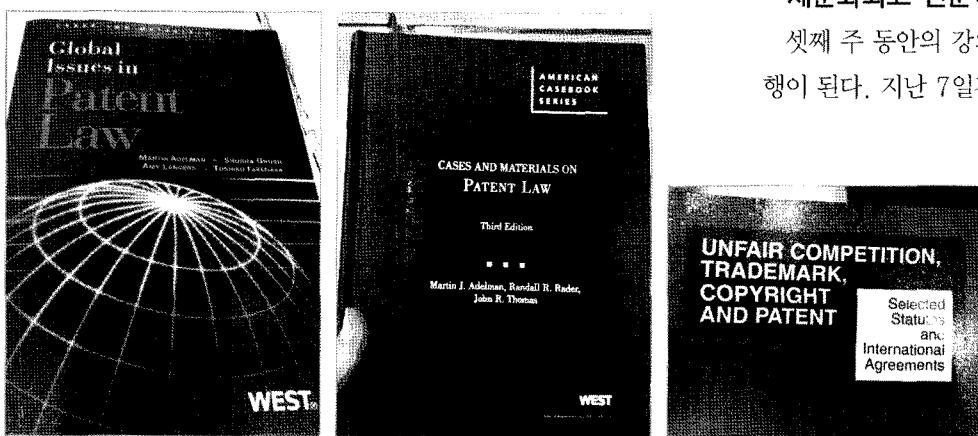


그림4. 강의에 사용된 기본 교재들

수강자가 기업의 특허팀에서 출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해외출원을 담당하는 변리사라면, Advanced Patent Prosecution Track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만일 기업의 경영자 내지는 특허라이센싱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특허권의 행사와 보호 그리고 특허매니지먼트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는 IP Enforcement and Management Track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 등 해외에서의 특허권의 행사와 보호에 보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EU and US IP Enforcement Track을 선택하면 된다.

이 세 개의 강의가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일부 중첩되는 사항들이 있어, 혼합강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각각의 트랙의 독특한 내용은 3개의 강의실에서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지만, 미국 내에서의 비교법 측면에서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공통강의가 진행된다. 미국이 오늘날 국제 경제체제 하에서의 분쟁을 다투는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특허법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우리기업과 미국기업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우리기업과 일본기업이 특허분쟁을 할 때에도 미국 법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해외의 어떤 기업과의 분쟁이라도 그 물품과 기술이 미국에서 생산, 판매, 수출되거나, 미국기업이 연관된 기술다면 미국에서 소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글로벌 기업이라면 미국에 사무소를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국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일이 빈번하기에, 비교법 관점에서의 현재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이슈들은 귀담아 듣기에 부족함 없는 내용이다.

각 트랙의 특징이라면,

Advanced Patent Prosecution Track에서는 Rule of Priority와 Continuation Strategies, Appeal at USPTO, Reexamination & Reissue 그리고 Office Action Strategies 등을 꼽을 수 있겠다. 그리고 Patent Drafting과 관련해서는 전기/기계, 화학/생명공학으로 세분화되어 명세서 구성 및 작성 전략이 다루어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산업분야에서 어떤 표현이 청구항에 사용되어어야 하는지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의 실험과 클레임의 구현과 그 입증을 위한 사항들을 다루게 된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의약분쟁(Drug Dispute)과 바이오기술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강의자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수강자의 토의 수준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도의 논의도 가능하다.

IP Enforcement and Management Track에서는 특허 실시권계약(Licensing)과 국내에서도 그 논의의 추이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학기술이전(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특허를 통해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조언을 담은 IP 창업기업(IP Entrepreneurship)에 대한 강의를 주목해 볼 수 있다. 특허평가(Patent Evaluation)와 관련된 강의도 이 트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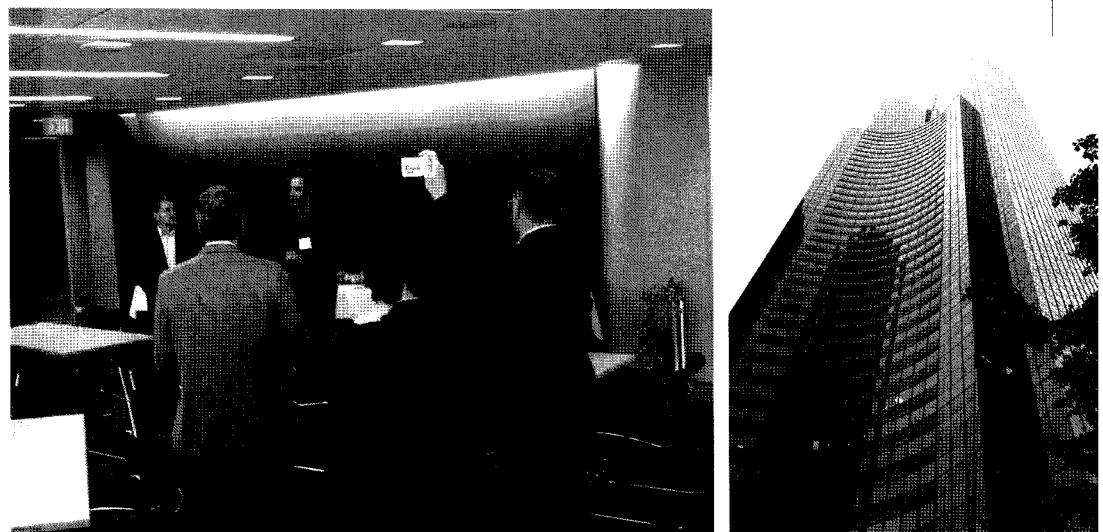


그림5. CASRIP의 강의자가 소속되어 있는 한 로펌이 주재한 리셉션에서 환영의 말을 하고 있는 주최자. 씨애틀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콜럼비아 센터에 사무실이 있다. 연수 과정 중에 서너 차례 진행되는 로펌 주재의 리셉션을 통해 로펌을 소개하고 수강자들 간 교류를 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다루어지고 있는데, 특허평가는 단순히 평가시스템이나 평가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외에 특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로 마무리 되었다.

세 번째 EU and US IP Enforcement Track은 독일의 직무발명 시스템(German Employee Invention System)과 EU의 법원의 구조와 재판권(EU Court System and Jurisdiction)을 다룬 강의가 특징적이었다. 특별히 WIPO의 PCT출원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PCT출원의 활발한 이용을 요청하는 내용의 강의가 이루어진 점에서는 이제는 특허출원 서비스도 상품화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특허제도를 이용하는 기업과 발명자를 위해 분명 WIPO뿐만 아니라, 각국의 특허청은 보다 적극적 일 필요가 있다. 특허제도 역시 하나의 서비스로 자각하고, 이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특허의 양적 팽창을 위한 정책의 수고에 앞서야 할 것이다.

빠뜨릴 수 없는 토론의 현장, High Technology Protection Summit

CASRIP이 마련한 IP 연수 일정 중에는 첨단기술에 대한 보호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포함되어 있다. 연수의 두 번째 주 금요일과 토요일의 주말 양일간 진행되는 이 세미나는 새롭게 대두되는 기술에 대한 특허동향과 특허보호의 방향설정 그리고 해외 각국 법원과 특허청의 역할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빌스키 사건 이후 특허요건과 KSR 사건 이후의 비자명성과 구제방안(Post Bilski Patent Eligibility, Post KSR Nonobviousness and Remedies), Ariad 사건에 대한 재해석(Rethinking Ariad, Infringement Issues and Inequitable Conduct), 미국의 특허법리에 대한 학문적인 분석에 대한 고찰(Reflections on Scholarly Analysis of Contributions to U.S. Patent



그림6. 로스쿨 내에 계단 강의장을 가득 메운 세미나 참석자들

Jurisprudence)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논의를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 법원에서의 미국 법리의 역할과 대학과 기업 간의 특허소유문제, 기술 라이센싱과 경쟁 원리 측면에서 여러 패널들을 통한 토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학술적이고 실무적인 논의의 마무리는 역시 미국답게 특허법에서의 윤리적 문제(Ethical Issues in Patent Law)로 짓는다.²⁾

세미나에 참여한 패널들은 대개 미국 내 저명 로스쿨 교수를 비롯하여, 특허법원 판사, 일본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 독일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미국 대형 로펌의 중국법인 소속 변리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특허전문가들이 해외에서 활약하는 바를 눈에 띠게 볼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강국이라는 말은 단순히 특허의 출원량으로만 평가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얼마나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며 특허4강 다운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규모야 어떻든 우리나라의 특허전문가들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날들을 기다려 본다.

마치며... (Seattle이라서 좋은 점)

씨애틀하면 우리는 어느 몇 스타벅스로 대변되는 커피 산업을 생각하게 된다. 커피 로스팅 회사로 시작한 스타벅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곳도 씨애틀이고, 스타벅스가 인수하고 말았지만, 아련한 기억 속에

있는 은막의 스타 신영균 씨가 한 때 사업주로 운영했던 스타벅스보다 1년 먼저 사업을 시작한 씨애틀즈 베스트 커피(Seattle's Best Coffee)의 고향이기도 하다. 씨애틀은 다른 미국의 거대도시들과 비교해서 분명 작은 도시이다. 그래서 딱히 커피 이외에는 대다수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씨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정도로 기억되기도 하지만, 실은 혁신과 기업의 도시이기도 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씨애틀에 둑지를 틀고 있으며, 스페이스 니들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수직 낙하할 법한 곳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설립한 빌 게이츠 재단 건물이 있다. 시카고나 뉴욕의 마천루에 비하면 나지막하다고 할 법하지만, 씨애틀에 본사를 갖고 있는 아마존닷컴이 자리한 콜롬비아 타워는 미서부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뿐만 아니라. 자랑스런 한국의 날개 대한항공의 주력 여객기 시리즈를 만들어 주고 있는 보잉(Boeing)도 씨애틀에 본사가 있다.

관심만 충분하다면, CASRIP의 네트워크를 잘만 활용하면 이들 기업의 특허팀 인력들과 미팅을 하거나, 본사 캠퍼스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혹은 이들 글로벌 기업의 특허업무를 의뢰받고 있는 혹은 이들을 상대해 본 로펌 소속 변호사와 변리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분명 마련되어 있다. 씨애틀의 선선한 날씨와 따사로운 햇살을 즐겨야겠다는 생각에 수업 외 활동을 래저와 관광으로 채우지 않고 귀한 시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씨애틀에 보금자리를 튼 글로벌 기업들을 알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 보기 바란다.

IP 연수프로그램은 대상별로 다양하겠지만, 단순히 학생 대상의 교육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허에 대한 학습과 다양한 로펌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특허분야에서 입지를 굳하고 있는 이들과의 만남과 교류는 무엇보다 강력한 참가 이유가 된다. 특히, 어느 분야에서나 마



그림7. IP연수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또 다른 교류의 장, 야구장!

찬가지겠지만, 특허분야의 전문인력은 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높여나가기 때문에 한번 관계를 맺으면 이후에도 상호의 유익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해외 연수를 고민하는 사람이나 기업이라면 분명 이러한 다양한 효과를 생각하고, 그 효율성을 가늠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 간략하나마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1. 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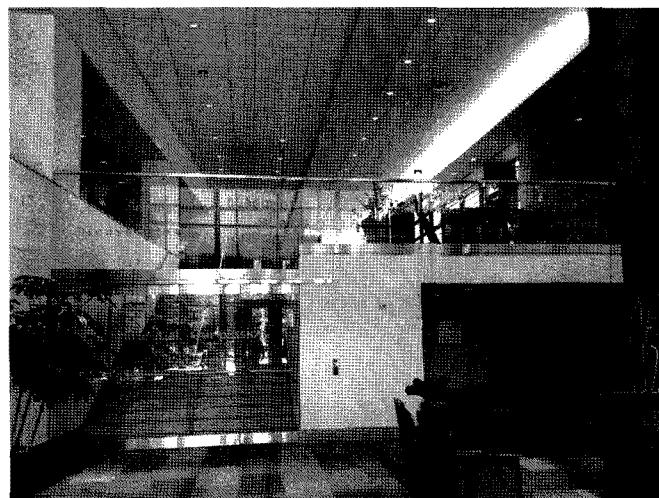


그림8. 각국의 언어로 ‘환영’을 표기한 유리 난간의 이 건물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Executive Briefing Center, Microsoft Future Vision 이라는 동영상을 통해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기술이 시연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2) 이 논의는 Therasense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불공정행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에서 국내외적으로 행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특허심사 중에 사실에 해당하는 사항을 USPTO에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특허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내용으로, 윤리적 측면이 결합된 데다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그 효력과 마찰이 적지 않다고 본다.